

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46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 (안 제8조제2항)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규정함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추가 (안 제14조)
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내용 추가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8. 12. ~ 2020. 8. 3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 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평생학습원장” 을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)” 을 “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7.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원센터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지원센터의 위탁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팀장 성 기 성
	담당자 성명·전화	오 윤정 (행정 2217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, 기능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 <u>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제9조(구성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1. ~ 6. (생략) ④ (생략)</p> <p>제14조(프로그램 및 활동지원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형성된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모임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, 기능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 <u>② -----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제9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국장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</p>

한 정보제공 및 홍보
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
7.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원센터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4조의2(지원센터의 위탁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